

계룡시훈령 제180호

계룡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계룡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1년간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를 “1개월”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를 “보수 전액을 감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룡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를 “계룡시대표·근로자대표 각 3인의 징계위원과 징계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3분의 2 이상의”를 “과반수”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를 “징계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62조 단서 중 “금품”을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 비위, 금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p> <p>② (생략)</p> <p>③ 정직은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u>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통상 임금의 <u>100분의 50을</u> 감액하여 지급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53조(징계의 효력) ① ----- ----- -- <u>하며, 1년간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1개월</u>----- ----- ----- 보수 전 액을 감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54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 ① 이 규정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는 <u>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룡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u> 관할한다.</p> <p>② (생략)</p>	<p>제54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 ① ----- ----- 계룡시대 표·근로자대표 각 3인의 징계위원 과 징계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계룡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1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u>3분의 2 이상의</u>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견이 따로 갈라서서 출석</p>	<p>제61조(징계의 의결) ① ----- ----- 과반수 ----- -----</p>

계룡시 고시 제2022 - 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684	계룡시 엄사면 다울1길 16	2022.01.14.	2020.09.29.	다울길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계룡시 고시 제2022 - 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충청남도 계룡시 정장리 6-5 외 8필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18-공-00 성능개량사업 설계용역(D060)』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 1. 20.

계 룡 시 장

1. 사업 시행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6-5번지 외 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18-공-00 성능개량사업 설계용역(D060)
3. 사업개요: 실시계획인가 면적 18,868㎡

건 물 명	전체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 별	건축물대장 면적(㎡)	신청면적(㎡)					
A+B+C	지상 1층	-	927.40	1,037.89	1,247.88	18,868	16.47%	24.14%
	지상 2층	-	334.73					
D	지상 1층	-	117.00	117.00	117.00			
E	지상 1층	-	234.80	234.80	468.00			
F	지상 1층	-	80.00	80.00	160.00			
G	지상 1층	-	77.00	77.00	77.00			
H	지상 1층	-	37.00	37.00	37.00			
통합사무실	지상 1층	-	546.47	664.52	1,851.70			
	지상 2층	-	657.03					
	지상 3층	-	657.03					
일반창고	지상 1층	-	153.39	163.29	153.39			
탄약고	지상 1층	-	46.20	46.20	46.20			
정비고	지상 1층	-	300.98	304.97	397.07			
총 계			4,555.24	3,107.86	4,555.24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성명: 국방시설본부장(국방부)

5. 시행기간(정정)

- (정정 전)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2. 03. 31.
- (정정 후)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2. 09.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계				9필지		177,419	18,868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	계룡	신도안	정장리	6-5	잡	11,856	425			
2	계룡	신도안	정장리	349-1	구거	1,331	45			
3	계룡	신도안	정장리	350-1	잡	664	11			
4	계룡	신도안	정장리	351-2	잡	248	247			
5	계룡	신도안	정장리	352	잡	1,207	268			
6	계룡	신도안	정장리	471-80	임	141,159	10,502			
7	계룡	신도안	정장리	471-90	잡	12,616	1,013			
8	계룡	신도안	정장리	471-92	잡	1,179	1,179			
9	계룡	신도안	정장리	471-93	잡	7,159	5,178			

계룡시 고시 제2022-1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0일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5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27	2022.01.20.	2009.05.27.	대실 택지개발지구를 남북 으로 관통하는 도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41-8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4-47	2022.01.20.	2009.05.27.	번영로에서 열 한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328-12	계룡시 엄사면 소라실안길 67	2022.01.20.	2009.05.27.	소라실길의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계룡시 공고 제2022 - 30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계룡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계 룡 시 장

1. 공고목적 : 계룡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내용 일반인 열람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
 - 계획범위 : 계룡시 행정구역 전역(60.74km²)
 - 주요내용
 -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
3.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2.1.20. ~ 2022.2.21.
5. 열람장소 : 계룡시청 안전총괄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안전총괄과(042-840-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공고 제2022 - 33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함(안 제15조의2)
- 나.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안 제58조)
- 다.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함(안 제24조의2)
- 라.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5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0. ~ 2. 10.(공고일부터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2022. 2. 10.일까지 계룡시장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전화 : 042-840-2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장소

- 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팀)
- 주소 :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금암동, 계룡시청)
- 전화 : (042)840-2901, 팩스 : (042)840-2909
- E-mail : hansy36@korea.kr

붙임 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개정조례안

계룡시 조례 제 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을 “(성장관리계획의 대상 지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 2제1항제4호” 를 “영 제70조의12제3호” 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로 하고, “성장관리방안” 을 “성장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8항 중 “영 제84조의3제2항” 을 “영 제70조의14제2항” 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는” 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을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된 인허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시건축과장	유 영 주
	도시계획팀장	한 상 윤
	담 당 자	한 상 윤 (840-290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 및 적용 원칙) ①·② (생 략) <신 설></p>	<p>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 및 적용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 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 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제24조(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u>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u> 1. 2. 3.(생 략)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u>성장관리방안</u>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u>성장관리방안</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24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따라 제2</p>	<p>제24조(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 <u>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u>-----. 1. 2. 3.(현행과 같음) 2. ----- <u>성장관리계획</u>----- -----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u>성장관리계획</u>----- -----.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현 행	개 정 안
<p><u>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제58조(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p> <p>①~⑦ (생략)</p> <p>⑧ <u>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u></p> <p>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u>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u></p> <p>⑨ (생략)</p> <p><u><신 설></u></p>	<p><u>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p> <p>1. <u>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u></p> <p>2. <u>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u></p> <p>3. <u>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u></p> <p>제58조(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p> <p>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u>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중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u>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u>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u></p> <p>⑨ (현행과 같음)</p> <p>⑩ <u>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u></p>

현 행	개 정 안
	<p><u>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u>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u></p> <p><u>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u></p> <p><u>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u></p> <p><u>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u></p>

계룡시 공고 제2022-66호

계룡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조정 등 공익업무를 맡은 이·통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에 맞게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 제7조제5항
- 제5조(이장·통장 해임) 이·통장 해임 조항 정비
 - 이장·통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장·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 이장·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제10조(이·통장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등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0. ~ 2022. 2. 9.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시정인사팀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우)32823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전화: 042-840-2102, FAX: 042-841-2904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 자치행정과(전화 042-840-2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규칙)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계룡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계룡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장·통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장·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8. 이장·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① 면·동장은 현임 이·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이·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통장의 임명기준,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 -----.</p>
<p>제5조(이장·통장 해임) ① 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p>	<p>제5조(이장·통장 해임) ① ----- -----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신설></p>	<p>6. <u>이장·통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장·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u></p>
<p><신설></p>	<p>7. <u>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u></p>
<p><신설></p>	<p>8. <u>이장·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u></p>
<p><신설></p>	<p>제10조(증명서 발급) ① 면·동장은 <u>현임 이·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u></p>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이·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룡시 공고 제202 1- 65호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1. 1. 12.개정, '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위원회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인수위원회 수행 업무, 구성인원, 운영기간, 결격사유

-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안 제9조~제11조)
 - 직원 : 계룡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요청 가능
 - 예산 :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등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계룡시청 기획감사실(기획팀)
 - 주 소 : 충청남도 장안로 46(금암동) / 우편번호 : 32823
 - 전화번호 : 042-840-2052/ FAX : 042-840-2059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 기획감사실 기획팀(전화 042-840-2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계룡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고 제2022-73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순회수리」의 명칭을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
 - (개정)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농업기계 순회교육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농업기계 순회교육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농업기계 순회교육 전용차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업기계 순회교육 대상 기종 및 부품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농업기계 순회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참조: 계룡시농업기술센터,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840-3411, E-mail: jinywitc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동의 리·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순회교육반 편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관리 한다.

제5조 (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소형기종으로 한다.

제8조 (순회교육 부품대금)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 (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 서식)

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 (사전홍보) 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동장과 이·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 (현장교육) 순회교육시 현장참여 농업인의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4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유관기관 및 이·통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 (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 표지(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주 소 : 계룡시 면·동 리
- 성 명 :
- 연 락 처 :
- 기 종 :
- 고장부위 또는 원인 :

상기 기종을 수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수리정비내역

수 리 정 비 부 위	부 품 교 환			소 모 품 사 용			금 액 (원)
	품 명	규 격	수 량	품 명	규 격	수 량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

년 월 일(요일)

결 재	담당자	팀장	소장

수리장소 :

수리정비내용 :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미스트기	예취기	양수기	분무기		기타
										동력	인력	
실 적	계											
	수리											
	정비											
부 품	교환	종										
		개										
	금액(원)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수불대장

품 명 :

일일	적 요	규격	구입 단가 (원)	수입	사 용	재 고	성 명	주 소	결 재		
									담당자	팀장	소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수불대장

품 명 :

월 일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결 재		
					담당자	팀장	소장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

월		월		월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구입가격(원)		비 고
				단 가	금 액	